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화장품 기재사항의 전자적 방법 기재 허용〉
■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7753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화장품 기재사항의 전자적 방법 기재 허용	2
가. 개정안의 내용	2
나. 검토의견	4
다. 관계 기관 등 의견	9

I. 개요

1.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775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안상훈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3. 25.
- (3) 회 부 일 : 2026. 3. 2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명, 업체명 외에도 전성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의 표시사항을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이지만, 포장면적이 협소한 제품에도 동일한 표시기준이 적용되어 글자 크기가 작아지고 가독성 및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化粧품의 기재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기준은 총리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안 제10조제3항 신설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화장품 기재사항의 전자적 방법 기재 허용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현행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1)에 따라 화장품 포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재·표시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기재사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기재사항 확인을 위한 코드와 전자적 방법으로 기재사항을 제공한다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등).

1)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①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다.

1. 화장품의 명칭
2.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3.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
4.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5. 제조번호
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7. 가격
8.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
9.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10.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화장품의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화장품의 명칭
2. 영업자의 상호
3. 제조번호
4.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0조제1항에서는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주소, 사용기한, 가격, 사용 시 주의 사항 등을 기재·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제38조제2호)에 처하도록 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40조제1항제5호의2)를 부과하도록 하는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²⁾

2) 「화장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1차 포장”이란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말한다.
3. “2차 포장”이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첨부분서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표시”란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숫자·도형 또는 그림 등을 말한다.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①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다.

1. 화장품의 명칭
2.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3.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
4.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5. 제조번호
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7. 가격
8.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
9.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10.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개정안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현행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화장품 포장에 기재·표시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기재·표시 공사의 제약으로 작게 표기될 수밖에 없는 기재사항의 가독성을 개선하여 화장품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안 제10조제3항 전단이 현행과 같이 기재사항을 화장품 포장에 직접 기재·표시하도록 하면서 이를 전자적 방법으로 함께 제공하는 것을 보충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인지, 또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하여 제공하는 것까지를 허용하려는 것인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 구매 결정 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전자적 방법의 이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알 권리 보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재사항별로 그 기재·표시를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제공하는 것이 적절할지가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참고로, 「약사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전문 의약품³⁾에 대하여만 그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여러

②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화장품의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화장품의 명칭
2. 영업자의 상호
3. 제조번호
4.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0조제1항(같은 항 제7호는 제외한다)·제2항을 위반한 자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5의2. 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11조를 위반하여 화장품의 판매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항목 중 용법·용량이나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일부 사항만을 전자적 방법으로 같음하여 그 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⁴⁾

식품의 경우에는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표시사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 중 제품명과 제조연월일·소비기한 등 소비자의 안전이나 제품 선택에 밀접한 항목은 식품에 직접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3)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 27개사 109개 품목의 전문의약품에 대하여 첨부 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2024년 2월 23일 공고(제2024-100호)하였음.

4) 「약사법」

제56조(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 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기나 포장인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을 적을 수 있다.

1.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위탁제조한 경우에는 제조소의 명칭과 주소를 포함한다)
2. 제품명
3.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4. 중량 또는 용량이나 개수
5. 대한민국약전에서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6.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품은 그 저장 방법과 그 밖에 그 기준에서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7.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유효 성분의 분량(유효 성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그 본질 및 그 제조방법의 요지) 및 보존제의 분량. 다만, 보존제를 제외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할 수 있다.
8.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문자
9.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약품에 첨부하는 문서 대신 전자적 방법 등으로 그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기되는 바코드 등으로 같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약품에 첨부하는 문서 대신 그 내용을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공한다는 문구를 용기나 포장에 적어야 한다.
10.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8조(첨부 문서 기재 사항) ① 의약품에 첨부하는 문서(이하 “첨부 문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용법·용량, 그 밖에 사용 또는 취급할 때에 필요한 주의 사항
 2.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의약품은 대한민국약전에서 의약품의 첨부 문서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3.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품은 그 기준에서 의약품의 첨부 문서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4.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인 경우에는 첨부 문서 대신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5)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한편, 안 제10조제3항 후단에서는 기재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문구로써 화장품 포장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전단이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장품 포장에 직접 기재·표시하는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면, 소비자가 해당 기재사항이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문구로써 화장품 포장에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지만,

개정안에는 안 제1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실효성 확보가 제한될 수 있는 측면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약사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전문

라.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일부 표시사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표시사항 중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표시사항)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2. 성분명 및 함량
3. 용기·포장의 재질
4. 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
5.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6. 식육(食肉)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7. 포장일자, 생산연월일 또는 산란일

[별표 1] 식품등의 일부 표시사항(제2조 관련)

4.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정보를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식품등

가. 식품 및 축산물

- 1)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배합비율 순위가 높은 3개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의 주용도만 표시한다)
- 2) 영업소 명칭
- 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별표 2 II 제1호자목에 따른 “질소가스 충전” 등 표시는 제외한다)
- 4)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5) 보관방법

의약품의 용법·용량이나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담은 문구를 용기나 포장에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⁶⁾

□ 아울러 현행법에서는 기재사항(가격을 제외한다)을 기재·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면서化粧品の 판매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⁷⁾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기재사항을 제공한 경우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6) 「약사법」

제56조(의약품 용기 등의 기재 사항) 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기나 포장인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을 적을 수 있다.

9.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약품에 첨부하는 문서 대신 전자적 방법 등으로 그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기되는 바코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약품에 첨부하는 문서 대신 그 내용을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공한다는 문구를 용기나 포장에 적어야 한다.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56조제1항, 제57조, 제58조, 제63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5조제1항, 제65조의2 또는 제65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한 자

7) 「化粧品법」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0조제1항(같은 항 제7호는 제외한다)·제2항을 위반한 자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의2. 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11조를 위반하여化粧品の 판매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다. 관계 기관 등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의 포장 면적이 협소하여 법령에 따른 기재사항을 모두 적기 어려운 화장품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기재사항을 제공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소비자는 화장품 선택에 필수적인 기재사항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고, 업계는 포장재 자원 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함.

-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4년 3월 화장품 정보를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명칭·제조번호·사용기한 등 주요 정보는 큰 글씨로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음.

다만, 화장품 표시제도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때 필요한 주요 사항을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과 관련된 제조번호·사용기한을 임의로 변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취지임을 고려할 때, 현행법 제10조8)에 따른 표시사항 중 ‘명칭, 영업자의

8)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①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다.

1. 화장품의 명칭
2.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3.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
4.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5. 제조번호
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7. 가격
8.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
9.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10.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화장품의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경우

상호,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제조번호,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등 주요 정보는 소비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에 기재하는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

영업자가 표시하는 코드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전자적방법이 표준화·통일화되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코드와 전자적 방법’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안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른 “문구”는 통상 총리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문구’로 수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

□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기재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함.

- 2024년 3월 시작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e-라벨 시범 사업’은 긍정적인 소비자 만족도를 바탕으로 2026년 2월까지 연장 운영되었으며, 이는 디지털 표시제도의 안정적인 안착 가능성을 시사하는 유의미한 성과로 보이고, 소비자의 제품 선택을 위한 표시사항 가독성을 향상하고, 모바일 기반의 정보 접근 편의성을 확대하며, 제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거나 비용·자원을 절약하는 등의 장점이 있음.

문 의 처

02)6788-5504

예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化粧품의 명칭
2. 營業자의 상호
3. 製造번호
4.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추진 배경

- 국내 소비 환경의 모바일 접근성 확대에 따라 화장품 정보 제공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전자적 표시정보(e-라벨) 도입 검토(규제혁신 2.0과제)
-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표시사항의 가독성을 높이는 한편, 업계의 포장재 자원 절약 및 창의적 디자인을 위한 기재 면적 확보

소비자 및 산업계 편익

- **【소비자】** 주요 표시사항 글자크기 확대로 가독성 향상 및 제품의 품질·안전 정보, 사용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득 → **소비자 편의 향상**
 - **【산업계】** 포장재 변경·폐기 감소 → **산업계 비용절감 및 탄소배출 저감**
- * '21년도 생산품목수 기준, 모든 포장재의 변경, 폐기 가정 시 약 5,300억 추정

□ 사업 개요

- **(참여업체)** 자체 e-라벨 플랫폼 구축·운영이 가능한 영업자
* (주)엘지생활건강, 애경산업(주), (주)코스모코스, (주)동방코스메틱, 엘오케이(유), 록시땅코리아(유)
- **(사업기간)** '24. 3월 ~ '25. 2월(1년 시행 후 법률개정·연장 여부 검토)
- **(대상품목)**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화장품(일부 제외)
* 화장품 유형 중 염모제, 탈염·탈색용 제품, 퍼머넌트 웨이브, 헤어 스트레이트너, 외음부 세정제 및 체모제거용 제품류는 제외
- **(표시정보)** 「화장품법」 제10조에 따른 모든 기재·표시 정보
- **(제공방법)** 제품의 용기·포장에는 주요 정보를 표시 및 e-라벨에는 모든 정보를 표시하여 전자적으로 제공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추진 배경

- 국내 소비 환경의 모바일 접근성 확대에 따라 화장품 정보 제공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전자적 표시정보(e-라벨) 도입 검토
 -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표시사항의 가독성을 높이는 한편, 업계의 포장재 자원 절약 및 창의적 디자인을 위한 기재 면적 확보

소비자 및 산업계 편익

- **【소비자】** 주요 표시사항 글자크기 확대로 가독성 향상 및 제품의 품질·안전 정보, 사용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취득 → **소비자 편의 향상**
 - **【산업계】** 포장재 변경·폐기 감소 → **산업계 비용절감 및 탄소배출 저감**
- * '21년도 생산품목수 기준, 모든 포장재의 변경, 폐기 가정 시 약 5,300억 추정

□ 사업 개요

- **(참여업체)** 자체 e-라벨 플랫폼 구축·운영이 가능한 영업자 13개
 - * (주)엘지생활건강, 애경산업(주), (주)코스모코스, (주)동방코스메틱, 엘오케이(유), 록시땅코리아(유), 방기정(주), (주)바스케이션, 아모레퍼시픽, (유)오아이오, (주)트리셀, (주)피엘코스메틱, 휴젤
- **(사업기간)** '25. 3월 ~ '26. 2월
- **(대상품목)**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화장품(일부 제외)
 - * 화장품 유형 중, 속눈썹펌제, 외음부 세정제 제외
- **(표시정보)** 「화장품법」 제10조에 따른 모든 기재·표시 정보
- **(제공방법)** 제품의 용기·포장에는 주요 정보를 표시 및 e-라벨에는 모든 정보를 표시하여 전자적으로 제공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